혼인의무효및위자료

[청주지방법원 2016. 12. 7. 2016드단3363]



【전문】

【원 고】원고

【피고】 피고

【변론종결】2016. 11. 23.

【주문】

]

- 1.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. 2. 15.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에 신고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.
- 2.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1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. 11. 12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- 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- 4.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【청구취지】주위적으로 주문 제1, 2항과 같다. 예비적으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. 주문 제2항과 같다.

【이유】

- 】갑 제1 내지 13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원고와 피고는 2015. 9. 18. 국제결혼중 개업체를 통해 결혼한 사실, 원고는 2016. 2. 15.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에게 혼인신고를 한 사실, 피고는 2016. 6. 8. 입국한 이후 원고에게 돈만 요구할 뿐 원고와의 부부관계 및 가사일을 거부하였고, 2016. 6. 17. 가출하였다가 2016. 6. 28. 집에 돌아 왔으나 2016. 8. 3. 다시 가출하여 현재까지 연락두절 상태에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.
-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사 없이 단지 취업 등 다른 목적으로 혼 인신고를 하고 한국에 입국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, 따라서 이 사건 혼인신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 치가 없어 민법 제815조 제1호에 따라 무효이다.
- 나아가, 원, 피고의 혼인이 무효가 됨으로써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,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,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혼인 무효의 경위와 과정, 원고가 이 사건 혼인을 위해 지출한 비용, 원, 피고의 각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,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는 21,000,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.
-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1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. 11. 12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그렇다면, 원고가 주위적으로 구하는 혼인무효 청구 및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판사 김경희

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